

시민단체 및 관계부처와의 공청회개최 결과보고

지난 10. 30 한국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에서 우리위원회 주관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안)” 과 “국가인권위원회직원채용에 관한 특례규정(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결과 보고임

주 관 : 국가인권위원회

참 석 : 총 92명

○ 토 론 자 : 7명

- 민 간 인 : 한인섭 서울대학교수, 진선미 변호사, 김정렬 장애인
우권익문제연구소장, 김기식 참여연대 정책실장

- 공 무 원 : 이영석 통일부정착지원과장, 박주범 국방부 법무
담당관, 김중학 경찰청 수사과장

○ 방 청 객 : 인권·시민단체 대표, 기타 관계자 등 85명

내 용

○ 주 제 : “국가인권위원회법, 어떻게 시행하고 직원채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 인사말씀 : 김창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진 행 : 사회 최영애 단장, 발제 정연순 변호사

※ 시 간 : 14:00~17:50(3시간50분),

○ 토 론 : 토론자의 의견발표와 방청객 질의응답

결 과 : 국가인권위의 출범에 대한 기대와 우려속에 각계의
이견과 발전방향을 확인하는 진지한 토론의 장이
되었음

공청회결과 나타난 각계의견

구분	시민단체	정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법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관과의 대립적관계를 탈피하고 상호협력 보완하는 관계 유지필요 (서울대 한인섭) ① 다수인보호시설은 열거규정 보다는 예시규정이 바람직함(대한변협 진선미) ② 인가시설보다 미인가시설에 대한 규정이 요구됨(장애우권의 김정렬) ③ 진정시 신속한 구제가 관건이며, 진정권보장조치 위반시 보조금 삭감등 제재수단 필요(참여연대 김기식) · 인권위의 조사대상기관이 될 경우 후원감소, 자원봉사감소등으로 심각한 부작용 우려(사회복지단체 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북자사회적응시설을 조사대상기관으로 한다면 북의 역비판의 빌미를 주는등 대북정책추진에 부담(통일부) · 군의 보안 및 지휘권보호를 위하여 사전통보 절차규정 필요(국방부) · 형사피해자 및 일선경찰관의 인권도 고려되어야 함(경찰청) · 시행령이 시설직원들에 대한 불신의 벽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음, 교도관의 의무와 형평을 맞추어야 하며 인권위 직원의 권한 견제장치도 필요 (서울구치소) · 교정시설에 대한 의무가 본법보다 더 과중함, 허위진정자 대책도 필요함(법무부 김안식) >> 방향성... 계28...
특례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단체의 활동이 10년 남짓한 상황에서 너무 인위적인 느낌있음 대상을 인권단체로 한정하는 배타적인 구도보다는 누구든 채용할 수 있게 문호개방 필요(서울대 한인섭) · 특례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나 경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대한변협 진선미) · 인권위의 바람직한 활동을 위해 인구대비 3000 : 1 정도의 직원이 필요함(참여연대 양영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례규정은 그 제정근거가 없으며 일반국민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니/현행법상 별정직이나 계약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임(행정자치부 이정렬)

1. 위원회안과 각부처의견 대비표

위원회안	각 부처안	비 고
제2조(다수인보호시설) 법 제2조 제3호에 정한 “다수인보호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조(다수인보호시설)----- ----- ----- 수정요구 <보건복지부>	
3. 정신보건법 제3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u>정신질환자사회복지시설</u> 및 정신요양시설	3.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u>정신의료시설</u> 및 정신요양시설	
5.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u>노인주거복지시설</u> , 동법 제34조제1항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u>노인의료복지시설</u> , 동법 제38조에 의한 <u>단기보호시설</u>	5.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u>노인주거복지시설(단 유료시설은 제외한다)</u> , 동법 제34조제1항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u>노인의료복지시설(단 유료시설은 제외한다)</u> , 동법 제38조에 의한 <u>단기보호시설(단 유료시설은 제외한다)</u>	
6. <u>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u>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착지원시설	<통일부> 6. 삭제 요구	

제3조(협조부서의 지정) 법 제20

조제1항, 제2항에 의하여 국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 대한 법령안의 통
보, 위원회와의 협의 및 기타
협력부터를 수행할 담당부서
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4조(구금·보호시설의 방문조
사)

① ~ ④ (생략)

<행정자치부>

제3조 삭제 요구

제4조(구금~보호시설의 방문
조사)

① ~ ④ (생략)

신설요구

<국가정보원>

⑤위원회가 방문조사를 하고
자 할 때에는 미리 방문조사
대상기관에 대하여 방문조사
의 이유 및 조사사항을 통보
하여야 한다.

<국방부>

⑤위원회가 군사시설을 방문
조사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에 출입시간 장소 및 목적에
대하여 관할부대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6조(시설수용자 등에 대한 면담조사등)

③법 제24조제5항에 의하여 입회하는 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은 위원 등의 요구없이 면담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시설수용자의 자유로운 진술을 억압할 우려가 있는 근거리에 앞거나 그밖의 방식으로 시설수용자의 자유로운 진술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시설수용자 등에 대한 면담조사등)

<국가정보원>

수정요구

③면담시 돌발사태를 대비한 직원입회를 보장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저촉, 면담의 필요성과 면담의 횟수제한을 위한 규정 필요

거리제한규정 삭제요구

다음과 같은 조 신설 요구

<국방부>

제0조(담당부서) ①군인 및 군무원의 인권문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산하에 특별사무소를 둔다.

②특별사무소에는 군관계자(군법무관)을 둔다.

<여성부>

제0조(진정의 이송) ①위원회는 진정의 내용이 법 제30조제1

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중 남녀차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리하도록 해당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된 진정의 사후처리에 관하여는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가정보원>

수정요구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 ①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제척은 위원장의 직권 또는 진정인의 신청에 의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 ① -----

-----진정 당사자의 신청
-----.

제17조(제척·기피신청에 대한 처리) ① · ② (생략)
③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위원장 또는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다.

제17조(제척·기피신청에 대한 처리) ① · ② (생략)
③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위원장 또는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이 보장되어야 함.

부 칙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보안업무규정 제7조제1항제2호의2.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을 신설한다.

②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가목 중 “대통령경호실장·감사원장”을 “대통령경호실장·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감사원장”으로 한다.

부 칙

수정요구

<국가정보원>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보안업무규정 제7조제1항제7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및 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을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 및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②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가목 중 “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을 “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행정자치부>

②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가목 중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을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2. 위원회안과 법무부의견 대비표

위원회안	법무부의견	비 고
<p>제2조(다수인보호시설) 법 제2조 제3호에 정한 “다수인보호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p> <p>1. ~ 5. (생략)</p> <p>6. <u>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착지원시설</u></p> <p>7. (생략)</p> <p>8. <u>출입국관리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보호실</u></p> <p>9. <u>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갱생보호시설</u></p>	<p>제2조(다수인보호시설)-----</p> <p>-----</p> <p>-----</p> <p>-----</p> <p>1. ~ 5. (위원회안과 같음)</p> <p>6. <삭제></p> <p>7. (위원회안과 같음)</p> <p>8. <삭제></p> <p>9. <삭제></p>	
<p>제3조(협조부서의 지정) 법 제20조제1항, 제2항에 의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대한 법령안의 통보, 위원회와의 협의 및 기타 협력부터를 수행할 담당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p>	<p>제3조(협조부서의 지정) <삭제></p>	

<신 설>

제4조(구금·보호시설의 방문 조사)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문 또는 조사일시, 방문 또는 조사의 취지, 조사하고자 하는 내용, 조사하고자 하는 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하여 실시조사 또는 감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5조(방문조사의 방법) ①법 제24조에 의한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 등은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위원 등은 녹음, 녹화, 사진 촬영, 시설수용자의 건강상태

제5조(방문조사의 방법) ①<삭 제>

②<삭 제>

의 조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시설수용자 등에 대한 면담조사 등) ①법 제24조제4항에 의하여 위원 등이 면담조사를 하는 때에는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에 서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시설수용자를 면담하는 위원 등은 면담장소에 입회하는 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③법 제24조제5항에 의하여 입회하는 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은 위원 등의 요구없이 면담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시설수용자의 자유로운 진술을 억압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근거리에 있거나 그밖의 방식으로 시설수용자

제6조(시설수용자 등에 대한 면담조사 등) ①<삭 제>

②-----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에게 면담장소에 입회하는 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의 수를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설수용자의 자유로운 진술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 자유로운 진술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위원 등이 법 제24조에 의한 방문조사시에 진정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7조(면담조사후의 보호조치)

①(생 략)

②위원 등은 법 제24조제4항에 의한 면담을 하였다는 이

④ <삭 제>

제6조(자료제출 등 요청의 방법) ①위원회는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기한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법 제22조제2항 및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인 등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취하고자 하는 진술의 요지, 출석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7조(면담조사후의 보호조치)

①(위원회안과 같음)

②-----의

유로 불이익 또는 신체·건강상의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시설 관계자 또는 시설수용자에 대하여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에게 불이익 또는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 설>

제8조(진정권의 고지) ①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시설수용자를 처음 수용하는 때에 위원회에 대한 진정권 및 그 행사방법에 대하여 시설수용자에게 고지하고, 위 사항을 기재한 안내서 또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시설수용자

유로 또는 -----

-----관리

인에게 위해방지를 -----

-----관리인

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

제7조(권고등의 방법) 위원회가 법 제25조와 제44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 등에 권고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8조(진정권의 고지) ①-----

-----안내서

의 상시열람이 가능한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생략)

제9조(진정함의 설치) ①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구금·보호시설 내에 진정함을 설치하고, 용지·필기도구 및 봉합용 봉투를 비치하여 시설수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③(생략)

제10조(진정권 행사의 보장) ①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보내는 진정서나 기타 서류에 관하여 집필의 사전허가 절차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②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보낼 목적으로 작성중이거나 소지하고 있는 문서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형식에 불문하고 이를 열람·압수하거나 폐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위원회안과 같음)

제9조(진정함의 설치) ① -----, 용지, 필기도구 및 봉합용 봉투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③(위원회안과 같음)

제10조(진정권 행사의 보장) ① ----- 위원회에 보내는 진정서나 기타 서류의 작성의사를 표명한 경우, 그 작성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 문서는 열람·압수하거나 폐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항의 의사표명없이 작성중이거나 소지하고 있는 문서에 대하여는 그

③(생략)

제11조(진정서의 송부등)

①·②(생략)

③소속공무원 등은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서면이든 봉투를 개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열람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원회가 시설수용자에게 보낸 서면에 대하여서도 같다.

제12조(전화 등에 의한 진정) ①

소속공무원 등은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전화나 팩스 또는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진정 또는 상담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 즉시 구급·보호시설 내에 설치된 전화나 팩스 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원회에 진정 또는 상담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소속공무원 등은 시설수용자의 통화내용을 청취하거나 팩스 또는 전

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안과 같음)

제11조(진정서의 송부등)

①·②(위원회안과 같음)

③-----

----- (단서 삭제)

제12조(전화 등에 의한 진정)

① <삭제>

②<삭제>

자문서로 송신되는 문서의 내용을 열람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진정) 법 제32조제1항제5호의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 함은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의하여 형사사건으로서 사건 번호가 부여되어 사건부에 등재되거나 전산입력된 이후의 상태를 말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4조(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진정) <삭 제>

제14조(조사의 방법)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등에 대한 출석이나 진술서의 제출요구와 관계기관 등에 대한 자료나 물건 등의 제출요구 및 사실 등의 조회는 사건 번호, 당사자의 성명, 목적, 일시, 장소,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5조(조사 및 처리기한) ① 위원회는 진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개시하거나 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조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정을 접수한

<신 설>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견진술기회의 부여) 위원회는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의 기회를 줄 때에는 그 일시 및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안

1.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2001. 5. 24. 법률 제6481호)되어 2001. 11. 25일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방문조사업무의 방법과 절차, 시설수용자의 자유로운 진정권 보장 등 이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수인보호시설을 열거함(안 제2조)
- 나. 구금·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의 방법과 절차, 구금·보호시설의 수용자 및 직원에 대한 면담조사를 하는 방법과 절차 및 면담조사대상자에 대한 보호방법을 규정함(안 제4조 내지 제7조)

다. 시설수용자의 자유로운 진정권 행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방법, 절차를 규정함(안 제 8조 내지 제12조)

라.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5조 내지 제19조)

마. 과태료부과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 23조)

바. 이 시행령의 제정과 함께 필요한 다른 법령을 개정함(부칙 제2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협의 : 법무부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임

라. 기타 : (1)입법예고 결과, 공청회 내용을 반영할 예정임
(2)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수인보호시설) 법 제2조제3호에 정한 “다수인보호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2.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생활시설
3. 정신보건법 제3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질환자사회복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4.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랑인보호를 위한 시설
5.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 동법 제34조제1항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 동법 제38조에 의한 단기보호시설
6.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착지원시설
7.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요보호자를 위한 복지시설
8.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보호실
9.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갱생보호시설

제3조(협조부서의 지정) 법 제20조제1항, 제2항에 의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대한 법령안의 통보, 위원회와의 협의 및 기타 협력업무를 수행할 담당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4조(구금·보호시설의 방문조사) ①법 제24조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구금·보호시설에 대하여 방문조사를 한 때에는 조사내용을 기재한 방문조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방문조사조서에 기재할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③법 제24조에 의한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 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찰공무원·경찰관서의 장이나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요청을 받은 공무원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등의 증표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방문조사의 방법) ①법 제24조에 의한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 등은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위원 등은 녹음, 녹화, 사진촬영, 시설수용자의 건강상태의 조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시설수용자 등에 대한 면담조사 등) ①법 제24조제4항에 의하여 위원 등이 면담조사를 하는 때에는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시설수용자를 면담하는 위원 등은 면담장소에 입회하는 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③법 제24조제5항에 의하여 입회하는 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은 위원 등

의 요구없이 면담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시설수용자의 자유로운 진술을 억압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근거리에 있거나 그밖의 방식으로 시설수용자의 자유로운 진술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위원 등이 법 제24조에 의한 방문조사시에 진정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면담조사후의 보호조치) ①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구금·보호시설의 관계자 또는 시설수용자에 대하여 법 제24조제4항에 의한 면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징벌·징계 기타 불이익한 대우를 하지 못한다.

②위원 등은 법 제24조제4항에 의한 면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 또는 신체·건강상의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시설 관계자 또는 시설수용자에 대하여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에게 불이익 또는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이 시설수용자에 대하여 제2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내용을 위원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진정권의 고지) ①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시설수용자를 처음 수용하는 때에 위원회에 대한 진정권 및 그 행사방법에 대하여 시설수용자에게 고지하고, 위 사항을 기재한 안내서 또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시설수용자의 상시열람이 가능한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이 시설수용자에게 고지할 사항 및 비치할 안내서 또는 스티커에 기재될 내용에 관하여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진정함의 설치) ①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구금·보호시설 내에 진정함을 설치하고, 용지·필기도구 및 봉함용 봉투를 비치하여

시설수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구급·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당해 구급·보호시설 내 진정함이 설치된 장소에 관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진정서 봉함용 봉투의 양식 및 제작방법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진정권 행사의 보장) ①구급·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보내는 진정서나 기타 서류에 관하여 집필의 사전허가 절차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②구급·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보낼 목적으로 작성중이거나 소지하고 있는 문서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형식에 불문하고 이를 열람·압수하거나 폐기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시설수용자는 징벌혐의조사 중이거나 징벌 중에 있다는 이유로 위원회에 진정할 권리를 제한당하지 아니한다.

제11조(진정서의 송부 등) ①구급·보호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이하 “소속공무원 등”이라 한다)은 시설수용자가 진정서봉투를 직접 봉함하여 진정함에 넣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소속공무원 등은 매일 지정된 시각에 진정함 내에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진정서 또는 기타 서류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진정서 기타 서류가 있을 경우 이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소속공무원 등은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서면이 든 봉투를 개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열람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원회가 시설수용자에게 보낸 서면에 대하여서도 같다.

제12조(전화 등에 의한 진정) ①소속공무원 등은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전화나 팩스 또는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진정 또는 상담하고자 하는 의

사를 표명한 경우, 즉시 구금·보호시설 내에 설치된 전화나 팩스 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원회에 진정 또는 상담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소속공무원 등은 시설수용자의 통화내용을 청취하거나 팩스 또는 전자문서로 송신되는 문서의 내용을 열람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방문진정접수) 법 제31조 제4항에 의하여 위원 등이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진정을 접수한 경우, 위원 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진정의 조사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진정인 또는 당해 진정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신체, 구금·보호시설 및 관련 물건을 조사하고 관계자와 면담할 수 있다.

제14조(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진정) 법 제32조제1항제5호의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 함은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의하여 형사사건으로서 사건번호가 부여되어 사건부에 등재되거나 전산입력된 이후의 상태를 말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 ①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들의 제척은 위원장의 직권 또는 진정인의 신청에 의하여 행한다.

②제1항 및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들의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은 위원회에 그 원인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과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위원은 지체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결절차의 정지)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의결절차를 정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제척·기피신청에 대한 처리) 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때에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각하한다.

②위원장은 제척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상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③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위원장 또는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다.

제18조(위원의 회피) ①위원이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피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회피의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9조(다른 위원의 지명) 소위원회의 위원이 제척, 기피 또는 회피에 의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그 직무를 수행할 다른 위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제20조(감정의 거부등) ①법 제36조제7항에 따라 관계국가기관이 자료, 물건 또는 시설에 대한 실지조사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이를 소명할 관계 국가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국가특별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21조(파견직원에 대한 보수지급) 위원회는 법 제54조에 의하여 파견받은 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관계인에 대한 여비지급)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인에게 여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위원장이 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

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과태료의 부과금액·납부기간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 등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주어진 기간 내에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보안업무규정 제7조제1항제2호의2.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신설한다.

②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가목 중 “대통령경호실장·감사원장”을 “대통령경호실장·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감사원장”으로 한다.

③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8호의2 “국가인권위원회소속공무원은 국가인권위사무처”를 신설한다.

국가인권위원회소속직원채용에관한특례규정(안)



1. 의결주문

국가인권위원회소속직원채용에관한특례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소속 일반직 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 응시자격과 방법,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조건과 임용절차 등에 관하여 공무원임용령·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계약직공무원규정 기타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위원회 소속 일반직공무원을 특별채용하는 경우에 임용예정계급 및 특별채용 시험응시자격을 위원회가 별도로 정함(제2조).

나. 위원회 소속 일반직공무원을 특별채용하는 경우에 특별채용시험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시험의 절차와 방법은 위원장이 행정자치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제3조).

다. 위원회 소속 별정직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의 임용과 채용기준을 위원회가 별도로 정함(제4조, 제5조).

라. 위원회소속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위원장은 사전에 사업의 필요성, 채용예정직의 업무내용·자격 및 채용조건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함(제6조).

4. 주요토의과제

없음

5. 관련법령 : 없음

<별지>

대통령령 제 호

국가인권위원회소속직원채용에관한특례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3항 및 제2조제4항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일반직 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 응시자격과 방법,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조건과 임용절차 등에 관하여 공무원임용령·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계약직공무원규정 기타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채용시험응시자격) 법 제28조제2항제6호에 의하여 위원회소속 일반직공무원을 특별채용하는 경우에 임용예정계급 및 특별채용시험응시자격은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6호에 불구하고 별표 1과 같다.

제3조(특별채용시험) ① 법 제28조제2항제6호에 의하여 위원회 소속 일반직공무원을 특별채용하는 경우에 특별채용시험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4조제1항에 불구하고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시험의 절차 및 방법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별정직공무원임용자격) 법 제2조제3항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소속 별정직공무원(비서실장·비서관 및 비서를 제외한다)중 일반직공무원 1급 내지 9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자에 있어서는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되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은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제3조에 불구하고 별표 2와 같다.

제5조(계약직공무원채용자격) 위원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자격기준은 계약직

공무원규정 제3조에 불구하고 별표 3과 같다.

- 제6조(계약직공무원채용절차) ① 위원회 소속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위원회 위원장은 사전에 사업의 필요성, 채용예정직의 업무내용·자격 및 채용조건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 위원장이 제1항에 의하여 사전통보를 한 경우 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제2항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7조(공무원임용령등의 준용) 위원회소속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임용령,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또는 계약직공무원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국가인권위원회소속일반직공무원의특별채용예정직급별경력기준

1급 : 별도 임용기준 없음

2급 : 인권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경력 17년 이상인 자

3급 : 인권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경력 14년 이상인 자

4급 : 인권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경력 9년 이상인 자

5급 : 인권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경력 4년 이상인 자

[별표2] 국가인권위원회소속별정직공무원의상당계급별임용자격기준

1급상당

1. 변호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16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2.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20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2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일반직 2급 또는 별정직 2급상당으로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인권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경력 20년 이상 실무경력자

6. 기타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급상당

1. 변호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1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2.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1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20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일반직 3급 또는 별정직 3급상당으로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인권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경력 17년 이상 실무경력자

6. 기타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급상당

1. 변호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10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2.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14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1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일반직 4급 또는 별정직 4급상당으로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인권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경력 14년 이상 실무경력자
6. 기타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급상당

1. 변호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2.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9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일반직 5급 또는 별정직 5급상당으로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인권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경력 9년 이상 실무경력자
6. 기타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급상당

1. 변호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2.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4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일반직 6급 또는 별정직 6급상당으로 4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인권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경력 4년 이상 실무경력자
6. 기타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6급상당

1.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2.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일반직 7급 또는 별정직 7급 상당으로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인권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경력 1년 이상 실무경력자
5. 기타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7급상당

1.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2. 전문대학졸업의 학력소지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3. 일반직 8급 또는 별정직 8급상당으로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기타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8급상당

1. 전문대학졸업의 학력소지자로서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2. 고등학교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일반직 9급 또는 별정직 9급상당으로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기타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9급상당

1. 고등학교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2. 기타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별표3] 국가인권위원회소속계약직공무원의채용자격기준

전문계약직공무원채용자격기준

가급

1. 채용예정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2. 채용예정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채용예정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자
5. 의료법에 의한 전문의자격이 있는 자
6. 공인회계사·변리사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7. 일반직5급 또는 별정직 5급상당 이상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실적이 10년이상 인 자로서 5년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8. 인권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경력 9년 이상 실무경력자
9. 기타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급

1. 채용예정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1의2. 채용예정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2. 채용예정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
4.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자
5. 공인회계사·변리사자격을 취득한 자
6. 일반직5급 또는 별정직5급상당 이상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실적이 7년이상인 자로서 3년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7. 인권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경력 6년 이상 실무경력자
8. 기타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급

1. 채용예정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2. 채용예정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인권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경력 3년 이상 실무경력자
4. 기타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라급

1. 채용예정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2. 채용예정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인권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경력 1년 이상 실무경력자
4. 기타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마급

- 위 "가 내지 라"의 자격 및 경력요건에 포함할 수 없는 자격·기능 및 경력이 있는 자